20.「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20-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비교증감
비과세·감면액 (A)		3,088,170,510	3,182,751,870	94,581,360
	비과세	2,493,075,290	2,531,882,660	38,807,370
	감면	595,095,220	650,869,210	55,773,990
지방세징수액 (B)		17,474,051,000	17,037,294,620	Δ 436,756,380
비과세·감면율 [A/(A+B)]		**15.0**	**15.7**	**0.7**

20-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비교증감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계	3,088,170,510	100.0	3,182,751,870	100.0	94,581,360	100.0
일반공공행정	1,218,920,900	39.5	1,274,078,380	40.0	55,157,480	58.3
공공질서 및 안전	39,555,480	1.3	41,236,830	1.3	1,681,350	1.8
교육	77,896,110	2.5	78,987,790	2.5	1,091,680	1.2
문화 및 관광	144,409,000	4.7	159,292,430	5.0	14,883,430	15.7
환경보호	132,530	0.0	177,310	0.0	44,780	0.0
사회복지	215,672,640	7.0	217,832,480	6.8	2,159,840	2.3
보건	8,764,630	0.3	8,845,960	0.3	81,330	0.1
농림해양수산	154,732,030	5.0	150,564,940	4.7	Δ 4,167,090	Δ 4.4
산업·중소기업	3,102,730	0.1	2,750,730	0.1	Δ 352,000	Δ 0.4
수송 및 교통	896,340	0.0	604,950	0.0	Δ 291,390	Δ 0.3
국토 및 지역개발	10,219,110	0.3	10,550,700	0.3	331,590	0.4
과학기술	-	-	-	-	-	0.0
국가	1,192,437,550	38.6	1,209,775,720	38.0	17,338,170	18.3
외국	-	-	-	-	-	0.0
기타	21,431,460	0.7	28,053,650	0.9	6,622,190	7.0

2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원, %)

분 야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비교증감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계	3,088,170,510	100.0	3,182,751,870	100.0	94,581,360	100.0
주 민 세	32,315,450	1.0	33,156,700	1.0	841,250	0.9
재 산 세	2,815,512,640	91.2	2,906,166,110	91.3	90,653,470	95.8
자 동 차 세	240,342,420	7.8	243,429,060	7.6	3,086,640	3.3

20-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 원)

구 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증감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1,109,533,760	1,160,656,210	51,122,450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비과세	73,584,280	76,360,950	2,776,670
종교,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	120,704,860	132,139,560	11,434,700
국가에 대한 비과세	1,192,433,660	1,209,771,370	17,337,710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39,671,790	40,740,080	1,068,290
농협의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105,018,010	90,844,100	Δ 14,173,910
농업법인의 영농, 유통, 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9,629,410	24,064,960	4,435,550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22,627,930	26,407,060	3,779,13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34,756,970	35,176,340	419,370
장애인에 대한 감면	143,793,150	142,647,970	Δ 1,145,18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8,764,630	8,845,960	81,330
임시용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3,449,120	7,838,210	4,389,09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38,061,480	38,085,020	23,54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4,336,920	6,626,620	2,289,700

20-5.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가. 일반공공행정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218,920,900**	**1,274,078,38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소 계**	**1,109,533,760**	**1,160,656,210**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의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1호, §90, §109① 1호)	주 민 세	3,000,000	3,000,000
	재 산 세	1,104,172,390	1,154,951,000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 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자동차세	2,361,370	2,705,21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재 산 세	116,660	43,390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재 산 세	35,685,700	37,017,250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90②)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재 산 세	73,584,280	76,360,950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1호)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500	580
- 지방공사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의 부동산의 경우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			

나. 공공질서 및 안전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39,555,480	41,236,830
1)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세	39,555,480	41,236,830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92③)			

다. 교육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교 육	합 계	**77,896,110**	**78,987,790**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소 계**	**38,061,480**	**38,085,020**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77① 1호, §90, §109① 1호)	주 민 세	200,000	200,000
	재 산 세	37,861,480	37,885,020
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39,671,790**	**40,740,080**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주민세·재산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1②, §41③, §41⑤)	주 민 세	1,600,000	1,600,000
	재 산 세	38,071,790	39,140,080
3)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162,840**	**162,690**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3②, §43③, §44)	주 민 세	100,000	100,000
	재 산 세	62,840	62,690

라. 문화 및 관광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144,409,000**	**159,292,430**
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120,704,860**	**132,139,560**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주민세·재산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②, §50③, §50⑤, §50⑥)	주 민 세	6,850,000	9,100,000
	재 산 세	113,854,860	123,039,560
2)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재 산 세	1,076,210	745,810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3)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 산 세	22,627,930	26,407,060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감면조례§4)			

마. 환경보호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환경보호	합 계	132,530	177,310
1)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132,530	136,470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7)			
2)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	40,840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바. 사회복지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사회복지	합 계	**215,672,640**	**217,832,480**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주 민 세	15,160,000	14,29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2) 장애인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	143,793,150	142,647,970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감면조례 §2)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소 계**	**11,219,950**	**11,840,810**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②, §22③, §22⑤)	주 민 세	2,371,750	1,800,000
	재 산 세	8,848,200	10,040,810
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재 산 세	5,042,340	4,786,710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4,122,430	4,376,900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6)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재 산 세	575,480	2,588,270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34,756,970**	**35,176,340**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에 대한 주민세·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주 민 세	50,000	50,000
	재 산 세	246,110	198,780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자동차세	34,460,860	34,927,560
8)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385,200	1,284,610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617,120	840,87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사. 보건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보건	합 계	8,764,630	8,845,960
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 산 세	8,764,630	8,845,960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아. 농림해양수산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54,732,030**	**150,564,940**
1)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재 산 세	5,097,450	5,549,370
- 관정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2)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4,336,920	6,626,620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 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19,629,410	24,064,960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재 산 세	9,355,940	10,600,740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2호)			
5) 어업인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	12,320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6)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77,230	-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7)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105,018,010	90,844,100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8)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11,217,070	12,866,830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 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자. 산업·중소기업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102,730**	**2,750,730**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재 산 세	447,020	48,320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재 산 세	1,570,600	1,586,450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35%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6)			
3) 매매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세	1,085,110	1,115,960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차. 수송 및 교통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896,340	604,950
1)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세	896,340	604,950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 승합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카. 국토 및 지역개발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0,219,110**	**10,550,700**
1)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6,370	5,740
- 사업지구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3,549,580	3,577,120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재산세 50% 감면 (감면조례 §7)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6,663,160	6,967,840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타. 국가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국 가	**합 계**	**1,192,437,550**	**1,209,780,070**
1) 국가에 대한 비과세	**소 계**	**1,192,433,660**	**1,209,775,720**
- 국가에 대한 주민세·재산세 비과세	주 민 세	1,350,000	1,350,000
(지방세법 §77① 1호, §109①)	재 산 세	1,184,638,110	1,201,708,670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 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자동차세	6,445,550	6,712,700
2)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재 산 세	3,890	4,350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파. 기타

(단위 : 원)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기 타	합 계	**21,431,460**	**28,053,65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재 산 세	3,449,120	7,838,210
-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3호)			
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세	11,137,060	12,816,080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1,660,790**	**1,932,380**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	주 민 세	500,000	500,000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재 산 세	1,160,790	1,432,380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 법령	지방세지출액		
	세 목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405,610	404,270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재 산 세	602,710	605,850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소 계**	**4,176,170**	**4,456,860**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주 민 세	1,133,700	1,166,700
	재 산 세	2,434,970	2,628,360
	자동차세	607,500	661,800